

개호보험제도 개요

(介護保険制度概要)

1. 개호보험제도는 고령사회 등으로 개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사회전체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介護保険制度は、加齢等により介護が必要となった人を社会全体で支えあう制度です。)

- 일본에 거주하는 40 세 이상인 분은 개호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日本に住んでいる40歳以上の人は、介護保険に加入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개호보험제도는 개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입자들이 서로 돈을 지불하여 고령 등으로 인해 개호를 필요로 할 때 개호에 총당하는 비용을 사회전체가 지원하는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介護保険制度は、介護の負担を軽くするために、加入者がお金を出し合い、加齢等により介護が必要となったときの介護に充てる費用を社会全体で支えあう、相互扶助を目的とした制度です。)

2. 40 세 이상인 분은 피보험자가 됩니다.

(40歳以上の人は被保険者になります。)

(1) 65 세 이상인 분은 제 1 호 피보험자가 됩니다.

(65歳以上の人は第1号被保険者になります。)

- 65 세가 되면 개호 보험 제 1 호 피보험자가 되어 거주지의 시정에서 보험증이 교부됩니다.

(65歳になると介護保険の第1号被保険者になり、お住まいの市町から保険証が交付されます。)

- 개호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시정에 요개호인정신청을 하여 개호인정을 받으면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介護が必要になったときには、市町に要介護認定申請を行い、認定を受ければ介護サービスを利用できます。)

- 보험증은 요개호인정신청을 할 때 필요합니다.

(保険証は、要介護認定申請のときに必要になります。)

(2) 40 세 이상 65 세 미만인 분은 제 2 호 피보험자가 됩니다.

(40歳以上65歳未満の人は第2号被保険者になります。)

- 40 세 이상 65 세 미만인 분은 개호보험의 제 2 호 피보험자가 됩니다.

(40歳以上65歳未満の人は、介護保険の第2号被保険者になります。)

- 제 2 호 피보험자가 되면 이하의 16 질병에 의한 개호가 필요해졌을 때 시정에 요개호인정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으면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第2号被保険者になると、以下の16疾病により介護が必要になったときに、市町に要介護認定申請を行い、認定を受ければ介護サービスを利用できます。)

<16 질병의 종류> (16 疾病の種類)

- 암 (がん)
- 관절 류머티즘 (関節リウマチ)
- 근육위축가쪽경화증 (筋萎縮性側索硬化症)
- 후종인대골화증 (後縦靱帯骨化症)
- 골절을 수반하는 골다공증 (骨折を伴う骨粗鬆症)
- 초로기의 치매 (初老期における認知症)
- 뇌혈관 질환 (脳血管疾患)
- 진행성핵상성마비, 대뇌피질기저핵변성증 및 파킨슨병
(進行性核上性麻痺、大脳皮質基底核変性症及びパーキンソン病)
- 척수소뇌변성증 (脊髄小脳変性症)
- 척추관 협착증 (脊柱管狭窄症)
- 조로병 (早老症)
- 다계통위축증 (多系統萎縮症)
- 당뇨병성 신경장애, 당뇨병성 신장증
(糖尿病性神経障害、糖尿病性腎症及び糖尿病性網膜症)
- 폐쇄성 동맥경화증 (閉塞性動脈硬化症)
- 만성폐쇄성폐질환 (慢性閉塞性肺疾患)
- 양쪽무릎관절 또는 고관절에 현저변형을 동반하는 변형성 관절증
(両側の膝関節又は股関節に著しい変形を伴う変形性関節症)

3. 개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

(介護サービスを利用するための手続き)

(1) 요개호인정의 절차

(要介護認定の手続き)

- ① 시정 개호보험담당과 또는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요개호인정신청의 상담을 합니다.
(市町介護保険担当課又は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に要介護認定申請の相談をします。)
- ② 시정 개호보험담당과에 요개호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市町介護保険担当課に要介護認定申請書を提出します。)
- ③ 시정의 인정조사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신청자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는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市町の認定調査員が自宅を訪問して、申請者の心身の状況などを調べる訪問調査を行います。)
- ④ 시정의 개호인정심사회에서 방문조사 결과 등으로 요개호상태의 구분이 판정됩니다.
(市町の介護認定審査会で訪問調査の結果などから要介護状態の区分が判定されます。)
- ⑤ 시정의 개호인정심사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시정에서 요개호인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市町の介護認定審査会の判定結果に基づき、市町から要介護認定の結果が通知されます。)

(2) 요개호인정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
(要介護認定の結果が通知されたとき)

- 요개호인정 결과 통지에는 비해당,요지원 1~2,요개호 1~5 중 하나의 요개호상태의 구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要介護認定結果通知には、非該当、要支援1~2、要介護1~5のいずれかの要介護状態の区分が記載されています。)
-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非該当の場合には、介護サービスを利用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 요지원 1~2 인 경우에는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케어플랜의 작성을 의뢰하여 케어플랜에 의한 개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要支援1~2の場合、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にケアプランの作成を依頼し、ケアプランに基づいた介護サービスを利用できます。)
- 요개호 1~5 인 분으로 자택에서 개호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정의 개호보험담당과 또는 지역포괄지원센터로부터 복수의 거택개호지원사업소 소개를 받아 그 중에서 적합한 거택개호지원사업소의 케어매니저에게 케어플랜 작성을 의뢰한 후 케어플랜에 의한 개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要介護1~5で、自宅で介護サービスを受けたい場合には、まず、市町介護保険担当課又は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から複数の居宅介護支援事業所の紹介を受け、その中から気に入った居宅介護支援事業所のケアマネージャーにケアプランの作成を依頼し、その後にケアプランに基づいた介護サービスを利用できます。)
- 요개호 1~5 인 분으로 시설에 입소하여 개호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소하고 싶은 시설의 케어매니저에게 케어플랜의 작성을 의뢰한 후 케어플랜에 의한 개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要介護1~5で、施設に入所して介護サービスを受けたい場合には、入所したい施設のケアマネージャーにケアプランの作成を依頼し、その後にケアプランに基づいた介護サービスを利用できます。)

4. 개호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介護サービスには次のサービスがあります。)

- 개호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介護サービスには、次のとおり様々な種類があります。)
- 요개호상태 구분(요지원 1~요개호 5)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要介護状態区分(要支援1~要介護5)により利用できないサービスがあります。)
- 개호서비스의 조합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介護サービスの組み合わせによっては、利用できないサービスがあります。)

(1) 자택에서 개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自宅で介護の手助けがほしいとき)

① 방문개호 (訪問介護)

홈ヘルパー 등이 이용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이용자의 입욕,배설,식사 등의 신체개호나 조리,세탁 등의 생활을 원조합니다.요지원1~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ホームヘルパーなどが利用者の自宅を訪問し、利用者の入浴、排せつ、食事などの身体介護や調理、洗濯などの生活援助を行います。要支援1~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② 방문입욕개호 (訪問入浴介護)

개호직원과 간호직원이 이용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지참한 욕조로 이용자의 입욕을 행합니다.요지원1~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介護職員と看護職員が利用者の自宅を訪問し、持参した浴槽で利用者の入浴を行います。要支援1~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③ 방문간호 (訪問看護)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질환 등에 처해 있는 이용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입욕,배설 등의 개호,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점적,욕창,가래흡인 등을 행합니다.
요지원1~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医師の指示により看護師などが疾患等を抱えている利用者の自宅を訪問して、入浴、排せつなどの介護、医師の指示に基づく点滴、じょくそう、痰の吸引などを行います。要支援1~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④ 방문재활치료 (訪問リハビリテーション)

물리요법사나 작업치료사,언어치료사가 이용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재활치료를 행합니다.요지원1~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理学療法士や作業療法士、言語聴覚士が利用者の自宅を訪問し、医師の指示に基づきリハビリテーションを行います。要支援1~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⑤ 거택요양 관리지도 (居宅療養管理指導)

의사,치과의사,약제사,관리영양사 등이 통원이 곤란한 분의 자택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관리나 지도를 행합니다.요지원1~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医師、歯科医師、薬剤師、管理栄養士などが通院困難な人の自宅を訪問し、療養上の管理や指導を行います。要支援1~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⑥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定期巡回・随時対応型訪問介護看護)

주간과 야간을 통한 복수회의 정기방문과 수시로 대응함으로써 전반적인 개호를 행합니다.요개호1~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日中と夜間を通じた複数回の定期訪問と随時の対応で、一体的な介護と看護を行います。要介護1~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⑦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夜間対応型訪問介護)

이용자가 야간에도 안심하고 재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순회나 통보시스템에 의한 야간전용의 방문개호를 행합니다.요개호1~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利用者が夜間でも安心して在宅生活が送れるよう、定期的な巡回や通報システムによる夜間専用の訪問介護を行います。要介護1~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⑧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

시설에 다니는 것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응하여 방문개호나 숙박 등의 서비스를 조합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요지원1~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施設への通うことを中心に、利用者の選択に応じて訪問介護や宿泊などのサービスを組み合わせたサービスを利用者に提供します。要支援1~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⑨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看護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와 방문개호를 조합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요개호1~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と訪問看護を組み合わせたサービスを利用者に提供します。要介護1~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2) 시설에 다니면서 개호나 재활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施設に通って介護やリハビリを受けたいとき)

① 통소개호・지역밀착형 통소개호 (通所介護・地域密着型通所介護)

당일치기로 시설에 다니는 이용자에게 식사,입욕 등의 개호나 기능훈련 등을 행합니다.요개호1~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日帰りで施設に通う利用者に食事、入浴などの介護や機能訓練などを行います。要介護1~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② 치매대응형 통소개호 (認知症対応型通所介護)

당일치기로 시설에 다니는 치매증이 있는 이용자에게 식사,입욕 등의 개호나 기능훈련 등을 행합니다.요지원1~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日帰りで施設に通う認知症のある利用者に食事、入浴などの介護や機能訓練などを行います。要支援1~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③ 통소재활치료 (通所リハビリテーション)

당일치기로 개호노인 보건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에 다니는 이용자에게 재활치료를 행합니다.요지원1~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日帰りで介護老人保健施設や医療機関などに通う利用者にはリハビリテーションを行います。要支援1~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3) 자택에서의 개호환경 정비를 희망하는 경우

(自宅での介護環境を整えたいとき)

① 복지용구 대여 (福祉用具貸与)

이용자의 일상생활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용구를 빌리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요지원1~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利用者の日常生活の自立を助けるための福祉用具を借りる費用の一部を支給します。要支援1~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② 복지용품 구입비의 지급 (福祉用具購入費の支給)

이용자의 입욕이나 배설 등에 사용하는 복지용품 구입비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요지원1~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利用者の入浴や排泄などに使用する福祉用具の購入費の一部を支給します。

要支援1~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③ 재택 개수비의 지급 (住宅改修費の支給)

이용자를 위한 손잡이 설치나 단차 해소 등의 재택 개수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요지원1~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利用者のための手すりの取付けや段差解消などの住宅改修の一部を支給します。要支援1~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4) 일시적으로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一時的に施設に入所したいとき)

① 단기입소 (短期入所)

이용자가 특별양호노인홈이나 노인보건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하여 식사, 입욕 등의 개호나 재활치료 또는 의학관리하의 식사, 입욕 등의 개호나 재활치료 등을 행합니다. 요지원 1~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利用者が特別養護老人ホームや老人保健施設などに短期間入所して、食事、入浴などの介護やリハビリテーション、又は、医学管理下での食事、入浴などの介護やリハビリテーションなどを行います。要支援1~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5) 시설에서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施設でサービスを受けたいとき)

① 특별양호노인홈 · 지역밀착형 특별양호노인홈

(特別養護老人ホーム・地域密着型特別養護老人ホーム)

상시개호가 필요하여 자택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이용자에게 특별양호노인홈 · 지역밀착형 특별양호노인홈에서 일상생활상의 지원이나 개호를 제공합니다.
요개호3~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常時介護が必要で自宅での生活が困難な利用者に、特別養護老人ホーム・地域密着型特別養護老人ホームで日常生活上の支援や介護を提供します。要介護3~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② 노인 보건시설 (老人保健施設)

병상이 안정된 이용자가 재택복귀할 수 있도록 노인 보건시설에서 재활치료를 중심으로 한 케어를 제공합니다. 요개호1~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病状が安定している利用者が在宅復帰できるよう、老人保健施設でリハビリテーションを中心としたケアを提供します。要介護1~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③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介護療養型医療施設)

급성기의 치료를 마치고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개호요양형 의료시설로 요양상의 관리, 간호, 의학적관리하에서의 개호, 재활치료 등을 제공합니다.

요개호1~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急性期の治療を終え、長期の療養を必要とする利用者に、介護療養型医療施設で療養上の管理、看護、医学的管理下での介護、リハビリテーションなどを提供します。要介護1~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④ 개호의료원 (介護医療院)

장기요양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개호의료원에서 의료와 일상생활상의 개호를 전반적으로 제공합니다.

요개호1~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長期療養が必要な利用者に、介護医療院で医療と日常生活上の介護を一体的に提供します。要介護1~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⑤ 유료노인홈 등 (有料老人ホームなど)

유료노인홈, 양호노인홈, 경비경감노인홈에 입소한 고령자에게 일상생활상의 지원이나 개호를 제공합니다.

요지원1~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有料老人ホーム、養護老人ホーム、軽費老人ホームに入居している高齢者に、日常生活上の支援や介護を提供します。要支援1~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⑥ 그룹홈 (グループホーム)

치매증의 고령자가 공동생활을 하는 주거(그룹홈)로 일상생활상의 도움이나 기능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요지원2~요개호 5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認知症の高齢者が共同生活をする住居(グループホーム)で、日常生活上の世話や機能訓練などを提供します。要支援2~要介護5の人が利用できます。)

5. 개호보험 이외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介護保険以外のサービスを受けるときには、全額自己負担になります。)

- 요개호상태 구분에 따라 정해져 있는 이용 가능한 개호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이용료나 이미용 요금, 일용품비, 오락비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要介護状態区分ごとに決まっている利用可能な介護サービス以外のサービスの利用料や、理美容代、日用品代、娯楽費などは、全額自己負担になります。)
- 시정에 따라서는 기저귀 요금, 배식서비스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市町によっては、おむつ代、配食サービスなどに補助金を支給しているところがあります。)
- 상세히는 케어매니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詳しくはケアマネージャーに相談してください。)

6. 개호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介護サービスを受けるときには、自己負担があります。)

- 요개호(요지원)인정을 받고 개호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 비용의 1 할에서 3 할의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要介護(要支援)認定を受け、介護サービスを受けるときには、実際の費用の1割から3割の自己負担があります。)

- 본인부담의 비율은 대략 아래 표와 같이 소득 등의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自己負担の割合は、概ね下表のとおり所得等の状況によって決まります。)

본인부담의 비율 (自己負担 の割合)	소득 등의 금액 (所得等の額)
1 할 (1割)	단 신 세 대 : 연금수입+그 외의 합계소득 금액이 160 만엔 미만 2 인이상세대 : 연금수입+그 외의 합계소득 금액이 346 만엔 미만 (単身世帯:年金収入+その他の合計所得金額が160万円未満) (2人以上世帯:年金収入+その他の合計所得金額が346万円未満)
2 할 (2割)	단 신 세 대 : 연금수입+그 외의 합계소득 금액이 160 만엔 이상 340 만엔 미만 2 인이상세대 : 연금수입+그 외의 합계소득 금액이 346 만엔 이상 463 만엔 미만 (単身世帯:年金収入+その他の合計所得金額が160万円以上340万円未満) (2人以上世帯:年金収入+その他の合計所得金額が346万円以上463万円未満)
3 할 (3割)	단 신 세 대 : 연금수입+그 외의 합계소득 금액이 340 만엔 이상 2 인이상세대 : 연금수입+그 외의 합계소득 금액이 463 만엔 이상 (単身世帯:年金収入+その他の合計所得金額が340万円以上) (2人以上世帯:年金収入+その他の合計所得金額が463万円以上)

- 본인부담의 금액이 일정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이 지불됩니다.
(自己負担の金額が一定の上限額を超えると、超えた金額が払い戻されます。
上限額は概ね下表のとおり所得の状況によって変わります。)

이용자부담 단계 구분 (利用者負担段階区分)	1 개월당 상한액 (1か月当たり上限額)
현역수준의 소득자 (과세소득 145 만엔 이상) (現役並み所得者(課税所得145万円以上))	44,400 엔 (세대) (44,400 円(世帯))
일반 (상기 또는 하기 이외의 분) (一般(上記又は下記以外の人))	44,400 엔 (세대) (44,400 円(世帯))
세대 전원이 시민세 비과세 (世帯全員が市民税非課税)	24,600 엔 (세대) (24,600 円(世帯))
• 본인의 과세연금 수입액과 합계소득 금액이 80 만엔 이하인 분 (本人の課税年金収入額と合計所得金額が80万円以下の人) • 노령복지연금 수급자인 분 (老齢福祉年金受給者の人)	15,000 엔 (개인) (15,000 円(個人))
생활보호 수급자인 분 (生活保護受給者の人)	15,000 엔 (개인) (15,000 円(個人))

7. 재택에서의 개호서비스에는 이용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在宅での介護サービスには利用上限額が決められています。)

- 재택에서의 개호서비스에는 아래 표와 같이 요개호상태 구분별로 이용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在宅での介護サービスには、下表のとおり要介護状態区分別に利用上限額が決められています。)
- 이용상한액을 초과하여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利用上限額を超えて介護サービスを利用すると、利用上限額を超えた金額は全額自己負担になります。)

요개호상태 구분 (要介護状態区分)	월액 이용상한액 (기준) (月額利用上限額(目安))
비해당 (非該当)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介護サービスを受けられません。)
요지원 1 (要支援1)	50,320 엔 (50,320 円)
요지원 2 (要支援2)	105,310 엔 (105,310 円)
요개호 1 (要介護1)	167,650 엔 (167,650 円)
요개호 2 (要介護2)	197,050 엔 (197,050 円)
요개호 3 (要介護3)	270,480 엔 (270,480 円)
요개호 4 (要介護4)	309,380 엔 (309,380 円)
요개호 5 (要介護5)	362,170 엔 (362,170 円)

8. 40 세 이상인 분은 보험료의 지불 의무가 생깁니다.
(40 歳以上の人には、保険料の支払い義務が生じます。)

- 40 세 이상이 되면 개호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40 歳以上になると介護保険料を納める必要があります。)
- 개호보험료는 시정이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합니다.
(介護保険料は、市町が金額を決定し、徴収します。)
- 개호보험료는 소득 등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介護保険料は、所得等の状況により金額が変わります。)
- 개호보험료 지불을 잊어버리거나 납부를 체납하면 개호보험의 재원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재산이 압류당하거나 개호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부담이 1 할에서 3 할이 되는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介護保険料を納めるのを忘れたり、納めずに滞納していると、介護保険の財源が確保できないばかりでなく、あなたの財産が差し押さえられたり、介護サービスを受ける際の自己負担が1割から3割になるなど、不利益が生じます。)

(1) 65 세 이상 (제 1 호 피보험자) 의 개호보험료
(65 歳以上(第1号被保険者)の介護保険料)

- 65 세 이상인 분의 개호보험료는 아래 표와 같이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65 歳以上の人の介護保険料は、下表のとおり対象者の状況により金額が変わります。)

보험료 단계 (保険料段階)	대상자 (対象者)	월액보험료 (月額保険料)
제 1 단계 (第1段階)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 (生活保護を受けている人) 세대전원이 주민세비과세로 노령복지연금을 받고 있는 분 (世帯全員が住民税非課税で、老齢福祉年金を受けている人) 세대전원이 주민세비과세로 전년도 합계소득금액 + 과세연금 수입액이 80만엔 이하인 분 (世帯全員が住民税非課税で、前年の合計所得金額+課税年金収入 額が80万円以下の人)	19,152 엔 (円)
제 2 단계 (第2段階)	세대전원이 주민세비과세로 전년도 합계소득금액 + 과세연금 수입액이 80만엔 이상 120만엔 이하인 분 (世帯全員が住民税非課税で、前年の合計所得金額+課税年金収入額 が80万円超120万円以下の人)	32,592 엔 (円)
제 3 단계 (第3段階)	세대전원이 주민세비과세로 전년도 합계소득금액 + 과세연금 수입액이 120만엔 이상인 분 (世帯全員が住民税非課税で、前年の合計所得金額+課税年金収入額 が120万円超の人)	46,032 엔 (円)
제 4 단계 (第4段階)	세대의 누군가에게 주민세가 부과되지만 본인은 주민세비과세로 전년도 합계소득금액 + 과세연금 수입액이 80만엔 이하인 분 (世帯の誰かに住民税が課税されているが、本人は住民税非課税で、 前年の合計所得金額+課税年金収入額が80万円以下の人)	60,480 엔 (円)
제 5 단계 (第5段階)	세대의 누군가에게 주민세가 부과되지만 본인은 주민세비과세로 제 4 단계 이외인 분 (世帯の誰かに住民税が課税されているが本人は住民税非課税で、第4 段階以外の人)	67,200 엔 (円)
제 6 단계 (第6段階)	본인이 주민세과세로 전년도 합계소득금액이 120만엔 미만인 분 (本人が住民税課税で、前年の合計所得金額が120万円未満の人)	80,640 엔 (円)
제 7 단계 (第7段階)	본인이 주민세과세로 전년도 합계소득금액이 120만엔 이상 200만엔 미만인 분 (本人が住民税課税で、前年の合計所得金額が120万円以上200万円未 満の人)	87,360 엔 (円)
제 8 단계 (第8段階)	본인이 주민세과세로 전년도 합계소득금액이 210만엔 이상 320만엔 미만인 분 (本人が住民税課税で、前年の合計所得金額が210万円以上320万円未 満の人)	100,800 엔 (円)
제 9 단계 (第9段階)	본인이 주민세과세로 전년도 합계소득금액이 320 만엔 이상 420 만엔 미만인 분 (本人が住民税課税で、前年の合計所得金額が 320 万円以上 420 万円 未満の人)	114,240 엔 (円)

제 10 단계 (第10段階)	본인이 주민세과세로 전년도 합계소득금액이 420 만엔 이상 520 만엔 미만인 분 (本人が住民税課税で、前年の合計所得金額が 420 万円以上 520 万円未満の人)	127,680 엔 (円)
제 11 단계 (第11段階)	본인이 주민세과세로 전년도 합계소득금액이 520 만엔 이상 620 만엔 미만인 분 (本人が住民税課税で、前年の合計所得金額が 520 万円以上 620 万円未満の人)	141,120 엔 (円)
제 12 단계 (第12段階)	본인이 주민세과세로 전년도 합계소득금액이 620 만엔 이상 720 만엔 미만인 분 (本人が住民税課税で、前年の合計所得金額が 620 万円以上 720 万円未満の人)	154,560 엔 (円)
제 13 단계 (第13段階)	본인이 주민세과세로 전년도 합계소득금액이 720 만엔 이상 820 만엔 미만인 분 (本人が住民税課税で、前年の合計所得金額が 720 万円以上 820 万円未満の人)	161,280 엔 (円)
제 14 단계 (第14段階)	본인이 주민세과세로 전년도 합계소득금액이 820 만엔 이상 920 만엔 미만인 분 (本人が住民税課税で、前年の合計所得金額が 820 万円以上 920 万円未満の人)	168,000 엔 (円)
제 15 단계 (第15段階)	본인이 주민세과세로 전년도 합계소득금액이 920 만엔 이상인 분 (本人が住民税課税で、前年の合計所得金額が 920 万円以上の人)	174,720 엔 (円)

(2) 40 세 이상 65 세 미만 (제 2 호 피보험자) 의 개호보험료
(40 歳以上 65 歳未満(第2号被保険者)の介護保険料)

- 40 세 이상 65 세 미만인 분의 개호보험료는 의료보험 보험료에 합산되어 있습니다.
(40 歳以上 65 歳未満の人の介護保険料は、医療保険の保険料に合算されています。)

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의 산정방법

(国民健康保険に加入されている人の算定方法)

개호보험료 = 소득을 + 균등을 + 평등을 + 자산을

(介護保険料 = 所得割 + 均等割 + 平等割 + 資産割)

② 건강보험조합 또는 전국건강보험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의 산정방법

(健康保険組合又は全国健康保険協会に加入されている人の算定方法)

개호보험료 = 급여 및 상여 × 개호보험료율

(介護保険料 = 給与及び賞与 × 介護保険料率)

(주) 상세히는 가입되어 있는 의료보험의 보험증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注) 詳しくは、加入されている医療保険の保険証発行元にお尋ねください。

9. 이 팜플렛은 개호보험의 개요를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상세히는 거주지의 시정의 개호보험담당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このパンフレットは、介護保険の概要をお知らせするものです。

詳しくは、お住まいの市町の介護保険担当課でお尋ねください。)

【연락처】(連絡先)

시정명 (市町名)	KAKEGAWA(掛川市)
개호보험담당과명 (介護保険担当課名)	Choju suishin-ka(長寿推進課)
전화번호 (電話番号)	0537-21-1196